

대통령령 제14,010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

※ 다음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93년 11월 20일 개정,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다.

産業安全保健法施行令 改正理由

經濟行政規制緩和對策 및 企業活動規制緩和에 관한 特別措置法(1993. 6. 11. 法律 第 4560 號)과 관련하여 일부 行政規制를 緩和함으로써 企業의 부담을 덜어주고, 産業安全保健法の 적용을 받는 사업의 分類에 관한 내용등을 補充·調整하려는 것임.

主 要 骨 子

가. 産業安全保健法の 적용을 받는 사업에 農業·狩獵業 및 漁業을 추가하고, 韓國標準産業分列表의 改正(1991. 9. 9. 統計廳告示 第91-1號)으로 産業의 종류 및 명칭이 달라짐에 따라 同法の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명칭을 調整함(令 第3條).

나. 産業安全保健政策審議委員會의 審議事項을 미리 協議·調整하게 하기 위하여 同委員會에 實務委員會를 두어 운영하도록 함(令 第8條의 2).

다. 專擔 安全管理者를 두어야 하는 建設事業場의 범위를 중전의 工事金額 50億원이상 또는 常時勤勞者 150人以上인 事業場에서 工事金額 100億원이상 또는 常時勤勞者 200人以上인 事業場으로 調整함(令 第12條 第2項).

라. 同一事業場에서 數次의 都給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受給人이 행하는 工事의 工事金額 및 각 受給人의 常時勤勞者를 각각 都給人의 工事金額 및 常時勤勞者로 보아 都給人이 해당 安全管理者 및 保健管理者를 選任하도록 함(令 第12條 第3項 및 第16條 第3項).

마. 事業主가 安全管理者 또는 保健管理者를 配置할 때에는 延長勤勞·夜間勤勞 등 당해 事業場의 作業形態를 고려하도록 함(令 第13條 第2項 및 第17條 第2項).

바. 安全管理者의 業務를 委託할 수 있는 事業場의 규모를 중전의 常時勤勞者 200미만인 事業場에서 常時勤勞者 300미만인 事業場으로 調整함(令 第15條 第1項).

사. 保健管理業務에만 專擔하도록 되어 있는 保健管理者라도 앞으로는 常時勤勞者 300미만인 事業場의 경우에는 다른 業務도 겸할 수 있도록 함(令 第16條 第2項).

아. 중전에는 陸上運輸業과 工團 등 事業場密集地域·僻地에 있는 사업의 경우에 事業場의 규모에 관계없이 保健管理業務를 代行機關에 委託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僻地에 있는 사업에 한하여 事業場의 규모에 관계없이 委託할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 第1項).

자. 安全保健總括責任者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범위에 常時勤勞者 100이상의 製造業을 추가함(令 第23條).

차. 建設工事의 都給人이 受給人에게 붙여서는 아니되는 조건의 내용을 設計圖書에 의한 工期의 短縮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令 第26條의 2).

카. 勞動部長官은 建設工事의 工事金額에 計上되는 標準安全管理費의 사용기준·방법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26條의 3).

〈법제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중
“경제기획원장관”을 “통계청장”으로 한다.

① 법 제 3조 제 1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범위 및 당
해 사업에 적용되는 법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 4 조 제 2 항중 “재무부·교육부”를 “재무
부·법무부·교육부·농림수산부”로, “교통
부”를 “교통부·체신부”로, “환경처”를 “환
경처·공보처”로 한다.

제 6 조 제 1 항중 “기계안전”을 “산업안전공학·
기계안전”으로, “건설안전·산업보건·산업
위생 및 산업재해통계”를 “건축안전·토목안
전·산업의학·산업간호·산업위생·유해
물질관리 및 산업재해통계”로 한다.

제 8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8 조의 2(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정
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협의·조정
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심의위원회에 실무위
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③ 제 8 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에 관
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12 조 제 2 항중 “50억원”을 “100억원”으로,
“150인”을 “200인”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
어서 법 제 1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과 동일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도급사업의 공사금액 또는 수급인(하수
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는 이를 각각 당해 사

업의 공사금액 또는 상시 근로자로 본다. 다만,
별표 3의 기준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의 공사
금액 또는 수급인의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3 조 제 1 항 제 1 호중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
다)”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
으로 하고, 동항 제6호중 “안전보건관리규정”
을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으로 하
며,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
장·야간 또는 휴일근로등 당해 사업장의 작
업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 15 조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
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300인미만을 사용하
는 사업으로 한다.

제 16 조 제 2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 3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의 보건관리자는 보건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

③ 제 12 조 제 3 항 및 제 4 항의 규정은 보건
관리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표 3”은 “별표 5”로, “안전관리자”
는 “보건관리자”로 본다.

제 17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10 호중 “안전보
건관리규정”을 각각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제10조
제2항”을 “제10조 제2항 및 제13조 제2항”으
로 한다.

제 19 조 제 1 항 중 “육상운수업과 공단등 사업장

밀집지역 또는 벽지”를 “벽지”로 한다.

제 20 조 제 2 항중 “산업보건의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 50인당 월 1시간 이상”을 “산업보건의는”으로 한다.

제 2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3 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

법 제 18 조 제 1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상시 근로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다) 50인(제 5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10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업
2. 제 1 차 금속산업
3. 선박, 보트 건조 및 수리업
4. 토사석채취업
5. 제조업(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제 25 조 제 2 항 제 3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대행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인 및 관리감독자중에서 사업주가 지명하는 자 6인(건설업의 경우에는 7인)이내

제 26 조의 2 및 제 26 조의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6 조의 2(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의 저해조건) 법 제 29 조 제 3 항의 규정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말한다.

1. 설계도서등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기간의 단축
2. 공사비절감등을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공법을 변

경하는 경우

3.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표준안전시방서에 현저히 위배되는 사항

제 26 조의 3(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① 노동부장관은 법 제 30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공사진척에 따른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 기준

2. 건설공사의 규모별·종류별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내역

3. 기타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② 노동부장관은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중 법 제 15 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외의 사업의 사업주에 대하여 표준안전관리비의 사용에 관하여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인력·시설기준 또는 수수료 기타 지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 28 조 제 1 항 제 10 호를 제 12 호로 하고, 동항에 제 10 호 및 제 11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송기마스크

11. 방열복

제 32 조에 제 5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1991년 6월 30일 이전에 제조 또는 수입된 물질로서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제 33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33 조의 2(기금의 설치) 법 제 53 조 제 2 항 제 5 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정부의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을 말한다.

제 35 조 본문 및 각호를 제 2 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 1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 58 조 제 1 항 제 3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 46 조에 제 6 호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 10 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 11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의 2. 법 제 37 조 단서 및 이 영 제 29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 등이 금지되는 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

11. 법 제 4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의 변경명령

제 47 조 제 1 항에 제 7 호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동항 제 8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의 2. 법 제 4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

8. 법 제 48 조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 및 심사

제 47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47 조의 2(수수료) 법 제 66 조 제 1 항 제 9 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별표 4의 제 7 호 및 제 8 호, 별표 6의 제 6 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별표 1]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중 제 7 호 및 제 8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7. 교육법에 의한 4년제 이공계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당해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1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으로서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동종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나 공사금액(건설업의 경우에 한한다) 100억원미만 또는 500억원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교육법에 의한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당해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를 5년(전문대학졸업자는 3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별표 3의 제 21 호의 사업 또는 제 22 호의 사업(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미만인 경우에 한한다)으로서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동종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에 제 93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화학물질
대통령령 제 13053 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부칙 제 7 조중 “1992년 12월 31일”을 “199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6 조 제 10 호 및 제 11 호와 제 47 조 제 1 항 제 7 호의 2 및 제 8 호의 개정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제 28 조 제 1 항 제 10 호 및 제 11 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또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또는 추가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게 된 사업주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보건관리업무위탁기준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하고 있던 사업주로서 제 19 조 제 1 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게 된 사업주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별표 1]

법의 일부적용대상사업 및 일부적용규정의 구분표

(제3조 제1항 관련)

대 상 사 업	적 용 규 정
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업(사진 처리업 제외)에 해당하는 사업(제3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법 제25조, 법 제33조 내지 법 제35조, 법 제37조, 법 제5장, 법 제6장, 법 제8장, 법 제9장
2.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 어업, 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신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법 제1장, 법 제14조, 법 제23조 내지 법 제25조, 법 제31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한한다) 법 제33조 내지 법 제35조, 법 제37조 내지 법 제39조, 법 제5장, 법 제6장, 법 제8장, 법 제9장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가. 광산보안법 적용사업(광업중 광물의 채광·채굴·선광 또는 제련등의 공정에 한하며, 제조공정을 제외한다) 나. 원자력법 적용사업(발전업중 원자력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장에 한한다) 다. 항공법 적용사업(항공기 및 우주선제조업과 여객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중중 항공관련사업을 제외한다) 라. 선박안전법 적용사업(선박, 보트건조 및 수리업을 제외한다)	법 제1장, 법 제16조, 법 제17조, 법 제24조, 법 제25조, 법 제26조 및 법 제31조중 보전에 관한 사항, 법 제27조, 법 제32조 내지 법 제35조, 법 제5장 내지 법 제9장

대 상 사 업	적 용 규 정
4.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자동차 종합수리업 및 자동차 전문수리업 제외),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연구 및 개발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특정 폐기물 수집·처리업, 세탁업 제외)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가. 최고사용압력이 매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미만의 증기보일러를 사용하는 사업 나. 연간 1백만킬로와트시미만의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 다. 전기사용설비의 정격용량의 합계 또는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미만인 사업 라. 연간 석유 250톤미만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 마. 월평균 4천세제곱미터미만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바. 저장능력 250킬로그램미만의 고압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법 제1장, 법 제23조 내지 법 제25조, 법 제33조 내지 법 제41조, 법 제5장 내지 법 제9장
5. 금융 및 보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병원 제외),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대 상 사 업	적 용 규 정
6.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사업장이 분리된 경우로서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포함하며,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7. 상시 근로자 5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법 제1장, 법 제30조, 법 제33조 내지 법 제35조, 법 제37조 내지 법 제40조, 법 제51조, 법 제52조, 법 제8장, 법 제9장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선임방법

(제12조 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규 모	수	선 임 방 법
1. 토사적채취업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4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8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를 졸업한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 또는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음식료품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3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8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를 졸업한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 또는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6.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7.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500인 미만	2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8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를 졸업한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제2호·제5호
8.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9. 비금속 광물			

사업의 종류	규 모	수	선 임 방 법
제품 제조업			또는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제1차 금속 산업			
1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외)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1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8호에 해당하는 자중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를 졸업한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0호 라목의 사업의 경우에는 교통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3.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			
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15. 의료, 정밀, 광학기계 및 시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제조업			
18. 가구 및 기타 제조업			
19.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20.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사업의 종류	규 모	수	선 임 방 법
21.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4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1,000인 미만	3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500인 미만	2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1	
22. 제1호 내지 제21호의 사업과 제23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5,000인 이상	4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를 졸업한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3,000인 이상 5,000인 미만	3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3,000인 미만	2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	1	
23. 건설업	공사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2	별표 4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별표 4의 제8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한 학교를 졸업한 자를 제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의 종류	규 모	수	선 임 방 법
		500억원 또는 상시 근로자 300인 을 기준으로 매 200인이 추 가 될 때 1인 씩 추가 됨)	외한다)를 선임하되, 별표 4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	1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보건관리자의 수·선임방법

(제 16 조 제 1 항 관련)

사업의 종류	규 모	수	선 임 방 법
1. 광업	상시 근로자 2,000인 이상	3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되, 별표 6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			
3.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4. 신발 제조업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2,000인 미만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5.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사업의 종류	규 모	수	선 임 방 법
6.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500인 미만	1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7.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8.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9. 제1차 금속산업			
10.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제외)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제조업			
1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 기계 및 전기 변환 장치 제조업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6. 가구 제조업			
17. 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사업의 종류	규 모	수	선 임 방 법
18.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19. 제조업(제2호 내지 제18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상시 근로자 3,000인 이상	3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되, 별표 6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1,000인 이상 3,000인 미만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	1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0. 제1호 내지 제19호의 사업과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구역내 철도운송업 제외), 건설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 근로자 5,000인 이상	2	별표 6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되, 별표 6의 제1호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5,000인 미만	1	별표 6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1.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50인 미만	1	별표 6의 제3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여야 한다.